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7. 1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3년 6월 26일

나. 발 의 자 : 김주범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 2013년 7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2013년 7월 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주범 의원)

가. 제안이유

- 국가에 헌신·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망위로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개정함.(안 제10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사망위로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조정하여 시행함.
- 대한민국 국권회복과 국가수호를 위하여 공헌·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본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려는 것임.
참고로 2013년 6월 현재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자치구는 19개구이며 지원금액은 동작구 등 6개구 15만원, 강서구 등 11개구 20만원, 서초구 등 2개구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국가보훈대상자의 연령층이 고령화되어 향후 지원대상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4
----------	-----

발의연월일 : 2013년 6월 일

발의자 : 김주범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국가에 헌신·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망위로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개정함.(안 제10조제2항)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나. 예산조치 : 2013년 예산 6,000천원 반영됨.

다. 합 의 : 사회복지과, 총무과 합의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13. 6. 20 ~ 6. 25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어느”를 “각 호의 어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 <u>뜻은</u>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한다.</p>	<p>제3조(적용대상) ----- ----- ----- ----- <u>각 호의 어느</u> ----- -----.</p>
<p>1. ~ 6. (생략)</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망위로금 지급)</p> <p>① (생략)</p>	<p>제10조(사망위로금 지급)</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로금은 <u>20만원</u>으로 한다.</p>	<p>② ----- <u>30만원</u>-----.</p>
<p>③ · ④ (생략)</p>	<p>③ · ④ (현행과 같음)</p>